

2017대선주권자행동

수 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참조 : 국가정보원 2차장)
발 신 2017대선주권자행동 (담당: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제 목 제19대 대선 정치적 중립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 준수 요구서
날 짜 2017. 4. 6. (총 3 쪽)

제19대 대선 정치적 중립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 준수 요구서

.....

1. 안녕하십니까?
2.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등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영향 없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귀 기관에 정치적 중립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를 지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선거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7대선주권자행동

정치적 중립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를 지켜주십시오

1.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기틀을 바로 세울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2. 모든 유권자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영향 없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 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가 한 선거개입의 진상규명과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이 조직들의 정치개입과 관변단체들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3.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정치중립 의무를 지켜 선거기간 중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4. 그런데 귀 기관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고, 2016년 총선 직전에도 탈북자 집단 입국을 통해 북풍공작을 시도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5. 이번 선거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인만큼 2017대선주권자행

2017대선주권자행동

동은 이번 선거에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를 발송하고,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감시 대상 5개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이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 의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보창구를 운영하는 등 「관권선거 꼼짝마!」 시민감시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6. 이에 귀 기관에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적 책무를 다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